

# 참고 자료: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의 아동보호 (v.1)<sup>1</sup>



*Photo courtesy of UNICEF/Leonardo Fernandez/India 2019*

## 개요

COVID-19 와 같은 전염병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. 가족, 교우관계, 일상생활 및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사회 혼란 등은 아동의 복지, 발달 및 보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. 더불어 COVID-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대처 방법들이

<sup>1</sup> 본문의 인용은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, Technical Note: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, Version 1, March 2019

아동들을 아동 보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. 가정, 시설 또는 지역을 거점으로 분리 및 격리하는 방법들은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<sup>2</sup>

이 보고서는 아동 보호 실무자들이 COVID-19 가 초래한 아동 보호 위험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본문 1 은 COVID-19 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아동 보호 위험들을 다루며, 본문 2 는 ['2019 인도적 상황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\(2019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, CPMS\)'](#)과 ['전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' \(Guidance Note: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\)](#)에 기초한 대응방안 들을 다룰 예정이다.

## 1.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의 아동보호

COVID-19 는 아동들의 생활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. 학교 폐쇄와 이동 제한 같은 격리조치는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반면, 부모 및 아동 보호자들에게는 새로운 보육 방법을 찾거나 (양육 때문에)출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. COVID-19 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. 젠더에 기반한 욕구 및 여성과 여아의 취약성을 반영하지 않은 질병 관리 조치는 보호 위험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, 이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. 사회경제적인 배재로 이미 취약해져 있거나, 포화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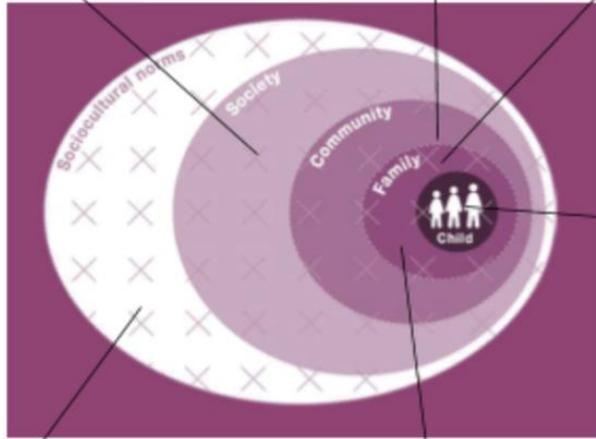
<sup>2</sup> 격리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 [Guidance Note: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](#), 14 쪽-15 쪽 참조

## 1.1. COVID-19 의 사회생태적 영향

사회자원의 붕괴:  
기초 서비스의 중단  
혹은 접근 제한

불신,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,  
지역사회 지원 서비스/교육/놀이  
이공간의 접근 제한

가족 분리, 사회적 지지의  
감소, 보호자의 스트레스,  
폭력/가정폭력 위험 증대



아동 학대, 방임,  
폭력, 착취 및 심리적  
스트레스 증대  
아동발달 저해

특정 인종/민족에 대  
한 낙인

생활고,  
가족유대 및 지지 약화,  
질병에 대한 두려움

## 1.2. 아동보호위험

현재 COVID-19 의 발병 상황에서 확인되고 있는 아동보호위험들과 과거 전염성 질병 유행 시 목격되었던 잠재적인 위험들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.

COVID-19 상황 및 대응 조치들로 인한 위험들	위험 요인들
<b>아동보호 위험: 신체적/정서적 학대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호자의 돌봄(Supervision) 감소 및 아동 방임</li> <li>• 아동학대 및 가정/대인관계 폭력 증가</li> <li>• 중독 및 기타 아동 부상의 위험</li> <li>• 아동보호 서비스의 과부하 또는 접근성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돌봄시설/학교 폐쇄, 보호자의 지속적인 요구, 질병, 보호자의 격리 등</li> <li>•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가</li> <li>• 유독성 살균제 및 주류의 오남용 가능성</li> <li>• 사고 신고에 있어서 장애요인 증가</li> </ul>

**아동보호 위험: 젠더기반폭력 (GBV)**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을 대가로 한 아동대상의 성관계 요구, 상업적 성 매매 및 강제 조혼 등의 성 착취 위험 증가</li> <li>• 아동보호/젠더기반폭력 대응 서비스의 과부화 또는 접근성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동을 위한 가족의 보호 감소</li> <li>• 가구 소득 감소 및 지역사회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인에 대한 의존도 증가</li> <li>• 가족 돌봄 혹은 가사일과 같이 젠더기반 가정 내 책임들을 여아에게 부과</li> <li>• 사고 신고, 의료적 처치 또는 기타 지원에 있어서 장애요인 증가</li> </ul>
---	---

**아동보호 위험: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스트레스**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죽음, 질병, 가족과의 분리 또는 질병의 두려움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</li> <li>• 기저 정신 건강 증상의 악화</li> <li>•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과부하 또는 접근성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료시설 격리 또는 자택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증가</li> <li>• 기저 정신건강 증상이 있는 아동과 부모/보호자들이 평상시와 같은 치료 또는 서비스 이용하는데 어려움 발생</li> <li>• 검역조치로 인한 지역사회 내 두려움과 공황상태 발생, 특히 아동의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심화될 수 있음.</li> </ul>
---	---

**아동보호 위험: 아동 노동**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동이 위험하거나 착취성의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 증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구 소득 상실 또는 감소</li> <li>• 학교 폐쇄로 인한 아동 노동의 기회 및 기대감 증가</li> </ul>
--	--

**아동보호 위험: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**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분리</li> <li>• 보호자와 헤어지거나 소년소녀가장이 되는 경우</li> <li>•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질병으로 인한 부모/보호자의 죽음</li> <li>• 아동과 떨어진 상황에서의 보호자의 분리/격리</li> <li>• 아동이 부모에 의해 질병의 영향이 없는 지역의 다른 가족과 지내게 되는 경우</li> </ul>
---	--

아동보호 위험: 사회적 배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된 개인 또는 감염을 의심받는 개인/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</li> <li>• 거리 아동 또는 이미 위험을 가진 아동에 대한 위험 증가 또는 지원 감소</li> <li>• 재판 중에 있거나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증가된 위험 또는 지원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을 의심받는 개인/집단에 대한 사회적, 인종적 차별</li> <li>• 사회적 소위 및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</li> <li>• 취약한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사회 기본 서비스의 중지 또는 접근의 어려움</li> <li>• 검역조치로 인한 출생 등록 절차의 중단</li> </ul>

## 2. 아동보호 대응

COVID-19 대응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 정부와 연계한 옹호활동, 다른 섹터와의 협력활동, 아동보호특화 활동이 있다.

### 2.1. 타 섹터 및 정부와의 협력

인도적지원 상황에서의 아동보호최소 기준(CPMS) 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, 감염성 질환 발생 예방 및 대응은 다양한 섹터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요구된다. 다분야(multi-sectoral) 대응은 a) 아동 및 보호자의 욕구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, b)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이끈다. 아동보호 활동가는 종교적, 전통적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.

다분야 개입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.

-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 사례를 문서화하고 의뢰 연계 하기 위한 표준 절차 수립
- 가족 분리 및 기타 형태의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/감소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(protocol) 수립
-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 및 배제 감소
- 질병 유행과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특유의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아동 친화적인 메시지 개발.

아동보호 활동가는 정부와의 협력 시 COVID-19 관련 제반 조치가 국제 표준 및 세계보건기구 (WHO)의 권고사항을 따르며, 인권을 기반으로 비차별적이고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옹호활동을 펼쳐야 한다.

정부 및 다분야 협력 시 아동보호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
### **보건 (CPMS 기준 24)**

- 취약 아동 및 그 가족이 의료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한다. (보편적이지 않은 경우)
- 보건 섹터 조사 및 모니터링/평가 시 아동보호 이슈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- 분리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가족 기반의 보건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 사례를 문서화하고 의뢰하는 공통의 표준 절차를 개발한다
- 가족 분리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례 사정 및 종결 절차의 수립에 대한 옹호활동을 펼친다.
-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과 부모/보호자 사이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.
- 아동이 치료 중이거나 격리되어 있을 시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조치 및 아동 친화적 소통방법 관련 지침 등 아동 친화적인 보건 시설/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업한다.
- 보건 종사자를 위한 아동 세이프가딩 교육을 지원한다 (특히, 아동이 가족 및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).
- 의료 시설에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불만 사항 및 고충처리 절차를 도입한다.
- 성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설에서의 강간 관련 임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, 관련 최소 임상 관리 물품들이 구비되도록 한다.
- COVID-19의 피해를 입은 아동 및 보호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및 심리·사회적 지원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메시지 전달을 위해 협력한다.
- 비상 계획에 COVID-19 발생 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한다.
- 서비스 알림 및 배포용 교육자료들은(Information, education and communication materials)문자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등 아동친화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되도록 한다.

### 급수,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증진 (CPMS 기준 26)

- 보건시설, 학교, 아동보호시설, 대안돌봄시설, 아동이 방문 가능한 시설 내에는 손 씻기가 가능한 아동친화적인 세면 시설이 확보되도록 한다.
- 전염병 발병 전 또는 진행 중에 아동, 부모/보호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개인 위생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실시한다. 이러한 활동에는 포스터 및 시각자료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.
- 급수 및 위생 시설내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.

### 영양 (CPMS 기준 25)

-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중인 아동과 가족들이 적절한 수준의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.
- 영양 지원 시설 내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.

### 교육 (CPMS 기준 23; INEE List of Resources)

- TV, 라디오 및 온라인 학습 등 아동친화적 원격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 중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.
- 돌봄 관련 제약이 있는 부모 및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 한다.
- 학교와 협력하여 공황 및 스트레스 감소, 불안감 해소 및 보건 관련 안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모 및 아동 대상 보호/안전 관련 메시지들을 전달한다.
- 교사 및 기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아동보호 필요가 있는 아동을 식별하고 의뢰연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징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.
-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젠더기반폭력(GVB) 위험경감,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(PSEA), 아동 세이프가딩 및 안전한 의뢰체계에 대한 필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.
-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 내 아동친화적인 불만사항 및 고충 처리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학교 내 아동보호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, 즉 사례관리, 가족 추적 및 재결합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개발, 배포 및 전시 한다.
- 교육 기관/담당자들과 협력하여 학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## 2.2. 아동보호 중점 프로그램

COVID-19 대유행에 따라 '인도적 상황에서의 아동보호 최소 기준([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](#))'과 '전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([Guidance Note: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](#))'내 기준 조치들을 보완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인가? 위험경감 외에, 우리는 지역사회, 가족, 보호자 및 아동들의 강점과 긍정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.

주요 아동보호 활동	
예방 활동	대응 활동
<b>아동보호 전략: 아동 복지(Child well-being)를 위한 개인과 그룹 활동 (CPMS 기준 10 &amp; 15)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심리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 활동을 모색한다.</li> <li>개입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여아를 포함한 아동,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건, 교육, 아동보호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COVID-19 와 관련된 아동보호 위험들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.</li> <li>아동들, 특히 격리 아동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.</li> <li>원격 방식으로 연령 및 젠더에 적합하도록 인식개선활동을 펼친다.</li> <li>기존 의뢰 체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.</li> </ul>
<b>아동보호 전략: 가족과 양육환경 강화 (CPMS 기준 16)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염병 발병 기간 아동을 보호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화적 믿음 및 가치 등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, 부모(양육자)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맺는다.</li> <li>반응적인 부모와 아동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식개선활동 기회들을 모색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적절한 자기 돌봄을 위한 지원을 위해 단기보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, 위탁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지원을 실시한다.</li> <li>소득활동에 영향을 받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재정 및 물질적 지원(현금 또는 비식량 물품 등)을 제공한다.</li> <li>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아동과 가족들이</li> </ul>

주요 아동보호 활동	
예방 활동	대응 활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돌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간 공동 계획을 수립한다.</li> </ul>	<p>서로 정기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관/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아동-가족 분리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실시한다.</li> </ul>
<b>아동보호전략: 지역사회기반 접근 (CPMS 기준 17)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식개선과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한다.</li> <li>•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약인구집단(예를 들어, 난민, 보육시설 아동, 사회적 낙인 및 배제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)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COVID-19, 관련 위험 및 서비스 의뢰 체계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메시지를 만든다.</li> <li>• 지역사회와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유연한 전략/방법들을 모색한다.</li> <li>• 지역주민들과 함께, 사회적 낙인 짚기를 멈추고 안전한 대응 기제(방법)를 장려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실시한다.</li> <li>• 만약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전통적 관습(예를 들어 인사, 매장, 장례식 등) 절차/방법 등을 조정한다.</li> </ul>
<b>아동보호전략: 사례관리 (CPMS 기준 18)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례관리사(caseworker)와 긴급아동 상담전화 직원들을 대상으로 COVID-19 관련 기본 사실, 오해, 아동보호 측면에서의 영향 및 지원활동들에 대한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한다.</li> <li>• 보건 기관/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소외되고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을 포함하기 위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건 섹터 및 다른 섹터와 함께 위험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파악하고 서비스에 의뢰하기 위한 표준운영규정(Standard Operating Procedure)을 개정 또는 개발한다.</li> <li>• 이동이 제한된 지역사회내 폭력 피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아동친화적이고</li> </ul>

주요 아동보호 활동	
예방 활동	대응 활동
<p>전략을 수립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례관리자들을 위한 위험 감소 방안 마련 및 가정 방문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한 대안 방안을 마련한다.</li> <li>• 젠더기반폭력(GVB) 피해자 지원과 같은 다른 특수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뢰체계를 강화한다.</li> </ul>	<p>총체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외된 지위로 인해 더욱 더 취약해 질 수 있는 아동들을 파악한다. (예를 들어 가족의 보호가 없는 아동; 난민, 국내실향민, 이민, 무국적; 거리 아동, 장애 아동, 등)</li> </ul>
아동보호 전략: 대안적 돌봄 (CPMS 기준 19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족분리를 방지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파악하고 호송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 관계자들을 파악하고 훈련하고 지원한다.</li> <li>• 지역사회내 COVID-19 발생시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파악하고 훈련을 제공한다.</li> <li>• 가족 분리를 방지하고 가족 추적 및 재결합에 관여하며, 보호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가족기반의 대안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하고 가족기반의 대안 돌봄 대책들을 수립한다 (친족 돌봄 등이 해당)</li> <li>• 양육자들과 떨어진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부모 혹은 양육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한다.</li> <li>• 의도치 않게 가족들이 자신들의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피한다.</li> <li>• 장기 분리를 막고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.</li> </ul>

### 3. 추가자료

<b><i>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Child Protection Resource Menu for COVID-19</i></b>	A collection of <a href="#">child protection resources</a> related to a COVID-19 response
<b><i>Key messages and actions for coronavirus disease (COVID-19) prevention and control in schools</i></b>	<a href="#">Operational guidance</a> on protecting children and schools from COVID-19
<b><i>INEE Resource Page on Novel Coronavirus (COVID-19)</i></b>	A <a href="#">collection</a> of COVID-19 and education in emergencies resources
<b><i>IASC MHPSS Reference Group's Briefing Note about MHPSS Aspects of COVID-19</i></b>	A <a href="#">briefing note</a> about MHPSS aspects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(COVID-19) outbreak